

kiri Weekly

2013.11.4 제257호

포커스

소득보상보험 도입 필요성과 시사점

글로벌 이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안 논의와 시사점

2013 IIF 연차 총회 주요 논의내용: 세계경제 및 금융산업 현안과 전망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소득보상보험 도입 필요성과 시사점

변혜원 연구위원, 김석영 연구위원

요약

■ 소득보상보험이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장애로 직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상품임. 국내에도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가 있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아 사적 소득보상보험을 통한 추가적 위험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소득보상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 및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책정, 그리고 지급심사 또한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국내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소득보상보험(DI: Disability Income Insurance)이란 일반적으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장애로 직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상품임.

- 소득보상보험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약속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상품임.
-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own occupation)와 모든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any occupation)로 직업의 정의를 상품마다 다르게 정의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¹⁾

- 영국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미국의 사회보장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스웨덴의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등이 공적 소득보상보험에 해당됨.

1) 조재린(2011), 「소득보상보험 활성화 방안」, KiRi Weekly를 참조 바람.

■ 미국의 경우에도 공적 장애보험이 있으나 낮은 소득대체율과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많은 기업들은 장기소득보장보험(LTD: Long Term Disability Insurance)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장애보장 공적보험으로는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과 추가소득보장(SO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 있음.
- 장기소득보장보험은 사적 소득보장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장기소득보장보험 혜택과 사회보장장애보험 혜택을 동시에 받을 경우 사회보장장애보험금 만큼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됨.
- 고용인이 제공하는 사적 소득보장보험은 공적 소득보장보험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당 근로자가 다시 직업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공

〈표 1〉 소득보상보험에 접근 가능한 근로자의 비율(2012년 기준)

(단위: %)

직종별	단기	장기	임금수준별	단기	장기
관리직, 전문직	44	53	25% 이하(최저)	17	8
서비스	20	12	25% 초과 50% 이하	35	30
판매직, 사무직	36	33	50% 초과 75% 이하	45	42
천연자원, 건설 등	37	27	75% 초과 100% 이하(최고)	51	58
생산, 운송	45	28	전체	36	33

- 주: 1) 민간 근로자(civilian) 기준이며, 민간 근로자에는 사적부분, 주, 지방정부가 포함됨.
 2) 평균 서비스이용비율(Take-Up Rate)은 단기소득보험의 경우 98%, 장기소득보험의 경우 96%임.
 3) 단기소득보상보험(Short Term Disability Income Insurance Plan)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함. 근로자의 소득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거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4) 장기소득보상보험(Long Term Disability Income Insurance Plan)은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한 상한 내에서 장애 이전의 소득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퇴직연령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 보험금이 지급됨.

자료: BLS(2012),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Employee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 아울러 미국의 경우 사적 소득보장보험이 공적소득보장보험에 비해 보험금청구 빈도가 낮고 보험금을 받은 후 복직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사적 소득보장보험은 근로자가 직무이행 제한의 징후가 보이는 시기에 신속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현상이 영구적인 장애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국내에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공적 소득보상보험 제도로 국민연금장애연금이 있는데, 지급기준이 엄격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아 사적 소득보상보험이 보완해야 할 여지가 존재함.

- 장애연금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가입기간 중 기준 월평균소득이 250만 원인 경우 장애 1급에 해당되는 가입자의 연금액은 약 26만 원으로 계산됨.²⁾
- 그러나 소득보상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 및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하여 지급심사 또한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CI보험과 같은 상품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중대한 질병에 대해 보장 하고 있으나, 소득보상보험은 직업수행이 불가능한 장애 상태를 초래하는 원인질환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원인이 있을 수 있어 부당한 보험금지급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보상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일자리에 복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도덕적 해이 가능성 존재
 - 장애 상태가 회복되어 직업 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 보험금을 받는 사기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아울러 소득보상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상품에 비하여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책정이 어려움.
- 소득보상보험의 장애상태는 직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되어 있어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가 요구됨.
 - 아울러 업무수행 불가능 상태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개인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것이며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평가해야 하므로 직업이나 재정적 측면에서의 언더라이팅도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니즈, 장애등급 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으로 주요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득보상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CI보험의 보험금은 질병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보상보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소득보상보험은 일시에 목돈으로 수령하고 싶은 계약자들의 니즈에는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

2) 장애연금액은 $1.425(A+B)(1+0.05n/12)$ 로 산정되는데, 여기서 A는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입. 국민연금(http://www.nps.or.kr/jsppage/business/busi/easy_04_03.jsp).

- 아울러 장애등급 판정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존재
- 따라서 소득보상보험 상품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및 지급심사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덕적 해이, 보험사기 등의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는 단계적인 상품 도입이 필요할 것임.
- 지급단계에서의 분쟁 또는 도덕적 해이 및 보험사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급심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임.
- 소득보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기간을 1~2년으로 설정해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거나,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보험금 지급사유를 CI 상품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직업 상실의 경우로 한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아울러 영구적 장애를 방지하는 조기복직지원시스템 등을 소득보상보험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